

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사유림의 매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9

삼척국유림관리소장



2017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동해지역 공·사유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붙임1. 매도승낙서] 양식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매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2017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삼척국유림관리소 추진계획 목표 물량	산림경영임지	
	면적	예산
	300,000m ² (90,750평)	171,000,000원

※ 계획량 및 예산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II.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1. 매수하는 산림 (삼척·동해 지역)

1) 산림경영임지

- (1)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일반토지 포함)
- (2)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3)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 (4)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로 분포하고 평균 경사도가 30°이하로서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임야

2. 매수하지 않는 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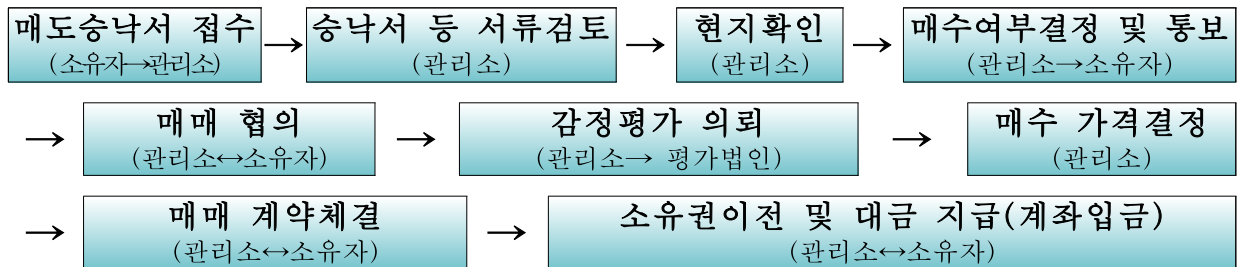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된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 공시지가가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 자문 받은 경우 예외)

3.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업자(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대·조립·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2) 매수절차



4.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FAX 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 2) 접수기간 : 연중

5. 기타 유의사항

-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곳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끝.

